

# 구미 송정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1회차) [비규제지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관망, 상담 중 마스크 미착용하는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건본주택 안내 요원의 예방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구미송정 범양레우스 사이버 건본주택 오픈에 따라 자세한 분양정보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분양 상담전화(☎054-461-0122)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인가기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와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절반 드중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에 거주해야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3. (월요일)**입니다. (주택소유여부, 청약자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3. (화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531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어전,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관리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계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양친 · 양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친조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당첨자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경비사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비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주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무순위 청약접수	추첨 및 순번발표	계약체결
일정	8월 24일(화) ~ 08월 25일(수)	8월 26일(목요일)	8월 28일(토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홈페이지 온라인 개별 확인	순번별 건여 동·호수 지정계약
장소	당사 구미 송정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gm-reus.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약통장 불필요</li></ul>	공공기관 추첨 대행업체(유니피커) 무작위 순번배정	당사 건본주택 (구미시 원평동 1071-8)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번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경성북도 구미시 송정동 250-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27층 6개동 총 486세대 및 부대편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 공급대상

주택구분	기존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민영주택	2021000531	01	059.9928A	59A	21
		02	059.9605B	59B	46
		03	084.8936	84	152
		합계			219

##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해당청제한 기간 내에 내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해당청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동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예비입주자 (예비당첨자) 중 예비입주자 추첨 미참가 세대는 무순위 참여가 가능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구분	기존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주택	2021000531	01	059.9928A	59A	13	101	205, 305, 405, 505, 605, 705, 805, 905, 1005, 1105, 1205, 1405, 1705	
					8	102	205, 405, 505, 605, 905, 1005, 1105, 1405	
					23	101	103, 104, 203, 204, 303, 304, 403, 404, 503, 603, 604, 703, 704, 804, 904, 1003, 1004, 1303, 1403, 1404, 1904, 2004, 2203	
					23	102	103, 104, 203, 204, 303, 304, 404, 503, 504, 603, 604, 703, 704, 804, 1003, 1004, 1103, 1104, 1204, 1603, 1804, 1904, 2403	
					26	101	102, 202, 301, 302, 401, 402,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1, 1202, 1301, 1302, 1401, 1402, 1701, 1802, 2602	
					23	102	102, 201,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2, 701, 901, 902, 1002, 1102, 1201, 1301, 1302, 1601, 1602, 1702, 1902, 2602	
					42	103	103, 104, 201, 202, 203, 204,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3, 504, 601, 602, 603, 604, 702, 704, 802, 803, 804, 901, 902, 903, 1001, 1003, 1101, 1102, 1204, 1301, 1404, 1604, 1701, 1704, 1901, 1904, 2104	
					16	104	201, 202, 301, 302, 401, 402, 502, 601, 602, 701, 801, 802, 901, 902, 1101, 1501	
		22	105	101, 102, 201, 202, 301, 302, 402, 501, 502, 602, 701, 802, 902, 1001, 1002, 1101, 1202, 1302, 1402, 1702, 1902, 2002				
		23	106	102, 201, 202, 302, 401, 501, 502, 601, 602, 701, 702, 801, 901, 1001, 1102, 1201, 1301, 1302, 1401, 1402, 1702, 1802, 2101				
		합계					219	-

구분	기존 주택관리번호	내용	
추첨 순번발표	2021.08.26. (목)	공공기관 추첨 대행업체(유니피커) 순번배정 <p>홈페이지 온라인 개별 확인 / 순번대별 참석시간 통보</p>	
계약체결	2021.08.28. (토)	10:00 ~	방명 : 시간 및 순번대별 건여 동·호수 지정 계약 <p>장소<span> </span>: 구미 송정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구미시 원평동 1071-8)</p> <p>※ 동·호수 지정 이후 즉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번으로 동·호수 지정 기회를 부여함</p>
		11:00 ~	
		13:00 ~	
		14:00 ~	
		15:00 ~	
		16:00 ~	

- ※ 계약 순번에 따라 동·호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연락처 입력 오기, 통화부재 및 SMS거부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순번 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서 작성 후 절차상 무주택세대원 여부 확인 후 계약서가 발송되며, 무주택세대원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부적격 사유로 취소 됩니다.
- ※ 계약자 명의를 최초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공동명의로는 불가함.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오류에 대해 재 가능	
	인간도장		이마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인간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과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외체류기간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계약금 현상수납 불가
제3차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확인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간도장	인간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간증명서	발급일 확인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간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 (서명) ※ 당사 주택진선권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의 주택소유 확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존·비속의 유무 확인 (세대원 주택소유 확인)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1.08.23. (월요일))** 이후 발행번호를 한하며, 인간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III.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해당청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도 과제대상과 납부기한·방법
  - 과제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 납부기한·방법 :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관리법령 - 인지도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stamp.or.kr)·우체국·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가산세 개정사항 (21.1.1.부터 적용)
    -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 3개월 초과 6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관리법령 - 국제기본법 제46조 4제9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주택(공유자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기.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중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작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결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매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한국토지신탁	(주)커미디스	범양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원로 3길 6-1, B1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왕길로 114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110111-5211802	110111-0015861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7.13.)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gm-reus.co.kr/)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위치 : 구미시 원평동 1071-8번지**
- **분양문의 : 054-461-0122**

- ※ 동 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의거하여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팔하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자세한 공사일정, 설계도서 및 마감재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